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향
의 결 연 월 일	2020. . (제 회)	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경두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사유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신설(일부개정, '19.11.26.)됨에 따라 기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중복 반영되어 있는 해촉사유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적용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.
- 나. 군인 기본권 교육 실시 횟수 증가(매년 1회→4회)에 대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일부 개정('19.11.26.)됨에 따라 기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상의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.
- 다. 군의 기율 유지 및 군기확립을 위하여 경미한 위반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실시하는 군기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6조(위촉위원의 해촉) : 삭제

나. 제24조제1항 : 삭제

1) 제24조제2항 : 제1항 삭제에 따른 조항을 변경(②→①)하고,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반영된 법률 조항을 명시

2) 제24조제3항, 제4항 : 제1항 삭제 따른 조항 변경(③→②, ④→③)

다. 군기훈련 방법 등 명시 (안 제24조의 2 신설)

1) 군기훈련은 교정을 목적으로 하며 인권침해가 없도록 명시

2) 군기훈련의 실시 사유, 횟수, 보고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법률 제16034호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 합의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3. 10. ~ 4. 20.)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6조, 제6조제1항,제2항,제3항,제4항을 삭제한다.

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24조제4항의 "기본권교육"을 "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본권교육"으로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,제2항,제3항으로 한다.

안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군기훈련 방법 등)

① 군기훈련은 법적제재 또는 징계 외에 경미한 위반자에 대한 교정·교화를 목적으로 시행한다.

② 군기훈련으로 인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며, 피교육생이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.

③ 군기훈련의 실시횟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기훈련은 1일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,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.

2. 군기훈련 종류 등 그 밖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총장에게 위임한다.

③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(군기훈련의 대상, 시기, 장소, 방법 등)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촉위원의 해촉)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	제6조 삭제 (삭제) (삭제) (삭제) (삭제)
제24조(기본권교육의 운영) ① <u>국방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「대한민국헌법」과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(이하 “기본권교육”이라 한다)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</u>	제24조(기본권교육의 운영) <삭제>

현행	개정안
② <u>기본권교육</u>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5. (생략) ③ (생략) ④ (생략)	① <u>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본권 교육</u>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 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
(신설)	<u>제24조의2(군기훈련 방법 등)</u> ① <u>군기훈련은 법적제재 또는 징계 외에 경미한 위반자에 대한 교정·교화를 목적으로 시행한다.</u> ② <u>군기훈련으로 인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며, 피교육생이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.</u> ③ <u>군기훈련의 실시횟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군기훈련은 1일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,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.</u> 2. <u>군기훈련 종류 등 그 밖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총장에게 위임한다.</u> ④ <u>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결과(군기훈련의 대상, 시기, 장소, 방법 등)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병영문화혁신팀	
연 락 처	02-748-5167